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남창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8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26일

발 의 자: 남창진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김규남,
김기덕, 김길영, 김동욱,
김영옥, 김용일, 김원중,
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
김춘곤, 김형재, 김혜지,
도문열, 문성호, 박 석,
박성연, 박영한, 박철성,
박환희, 봉양순, 서상열,
서준오, 소영철, 송경택,
송도호, 신복자, 심미경,
유만희, 유정인, 윤영희,
이상욱, 이상훈, 이영실,
이원형, 이종태, 이종환,
정준호, 채수지, 최민규,
최유희, 최재란, 한 신,
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
의원(48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의용소방대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조직) 및 「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조직)에 따라 의용소방대 내에 부장 및 반장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, 직위 임명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 또는 기준이 불분명하여 각 소방서별 동일한 기준의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바, 이를 명확히 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의용소방대 대원 중에서 부장, 반장을 임명할 경우에 그 자격과 고려 사항을 명확히 하고, 책임자가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. (안 제7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부장·반장의 임명 기준) 대원에서 반장, 반장에서 부장으로 직위를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,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설>	<p>제7조의2(부장·반장의 임명 기준) 대원에서 반장, 반장에서 부장으로 직위를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 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 되,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 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